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손해배상(기)

원 고 [redacted]

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 [redacted] 조효동

변 론 종 결 [redacted]

판 결 선 고 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41,002,300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[redacted]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1/2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